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79
----------	------

2021년 9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8월 10일 이영실 의원 외 9명
2.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3. 상정일자 :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9월 6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이영실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무와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 시장으로 하여금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신고 현황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은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장애인 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유형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정서적 학대	언어적인 방법(폭언, 협박, 비하 등)이나 비언어적인 방법(무시, 비웃음 등) 등 다양한 형태로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심한 수치심,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학대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의 성적 착취, 성희롱 등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경제적 착취	장애인의 금전, 가치 있는 물건 등 재산을 힘으로 빼앗거나 장애인을 속여서 스스로 내어놓도록 함으로써 행위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행위
유기·방임	유기는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후견인 등)이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방임은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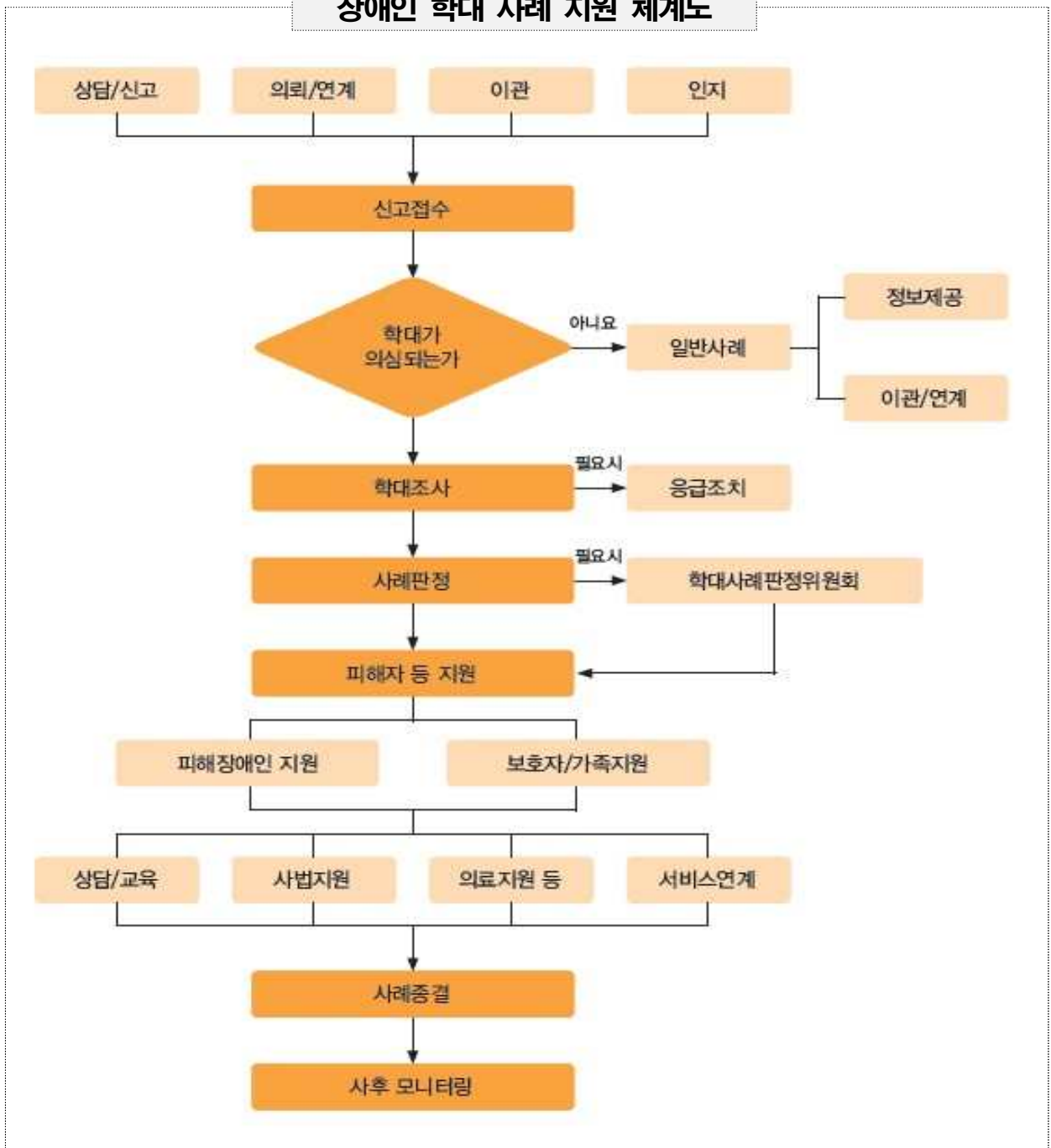
- 또한, 동법 제59조의4¹⁾는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제59조의4제2항에서는 장애인 대상의 학대,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학대 사례 발견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으로 신고하면, 이에 대해 ‘신고접수 → 조사 → 사례판정 → 피해자 등 지원 → 사례종결 → 사후 모니터링’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음.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이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이동권리보장원 및 「이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장애인 학대 사례 지원 체계도



- 최근 3년간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서 총 2,305건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학대의심 신고건수는 343건으로, 학대조사 이후 317건(성적학대 13건 포함)이 학대사례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수)

구분	신고접수			학대사례판정	
	학대의심	일반	합계	전체	성적 학대
2020년	125	513	638	186	8
2019년	106	679	785	74	5
2018년	112	770	882	57	0

- 2020년 서울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신고접수자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학대의심사례 125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49건(39.2%)이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76건(60.8%)임.
-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1건 등의 순으로 확인됨

<표> 2020년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신고자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세부유형										
	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활동지원인력 및 기관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	의료기사	정신건강복지센터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아동권리보장원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종사자
신고의무자	49	11	26	3	2	1	1	2	1	1	1
신고비의무자	76	13	10	3	5	5	2	4	2	12	1

나. 세부 조례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안 제5조제1항)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지체 없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였음.(안 제5조제2항)
- 또한, 시장으로 하여금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였음.(안 제5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252 1104 400 1142"><신 설></p> <p data-bbox="220 1888 603 1924">제5조 ~ 제13조 (생략)</p>	<p data-bbox="823 1104 1396 1346">제5조(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p> <p data-bbox="853 1357 1396 1653">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p data-bbox="853 1664 1396 1861">③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data-bbox="823 1888 1396 1973">제6조 ~ 제14조 (현행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p>

- 본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상충될 여지는 없다고 하겠음.

다. 조례 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 : 원안동의

-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를 명시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음.
-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증가되고 있으나 장애인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대의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학대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 학대사건은 신속한 발견을 통한 초기개입이 중요함.

- 또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전체 신고 건수(125건) 중 장애인 당사자 본인에 의한 신고 건수(13건)는 10.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무 특성상 피해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임.
-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신고의무자는 물론이고 일반시민에게도 장애인 학대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대신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개정안은 적합하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79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0일

발 의 자 : 이영실,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제리, 김창원,
김화숙, 박기재, 이승미,
조상호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직무와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제2항)
- 나. 시장으로 하여금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5조(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u></p> <p><u>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u></p> <p><u>③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u>제5조 ~ 제13조 (생략)</u></p>	<p><u>제6조 ~ 제14조 (현행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u></p>